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-1073호

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된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,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5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지급신청

- 가. 사용비용 보조 대상 :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나. 신 청 인 : 해산조합 대표자 이철수
- 다. 신청금액 : 금3,024,199,000원
- 라. 신 청 일 : 2021. 7. 26.(월)

2. 지급계획

- 가. 지급금액 : 금3,024,199,000원
- 나.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내역

(단위 : 천 원)

업무항목	지급예정금액	업무항목	지급예정금액
인건비	436,473	조사측량비	161,861
일반운영비	145,487	설계감리비	551,670
제세공과금(운영)	101,343	공사비	-
업무추진비	1,288	외주용역비	1,099,571
복리후생비	47,464	각종부담금	112,395
회의비	27,360	제세공과금(사업)	30,433
기타운영비	-	총회비	308,854
합계			3,024,199

다. 이해관계자 현황

연번	이해관계자	채무사유	비고
1	디엘이앤씨(주)	대여금 미지급	
2	(주)라운디에스	외주용역비 미지급	
3	이철수	대여금 미지급	

라. 지급대상 : 해산조합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

마. 지급방법 : 해산조합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에 직접 지급

바. 지급일자 :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 10일 이후(서울시 보조금 교부 후 지급 가능)

사. 공고방법 : 구보·홈페이지·게시판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

아. 공고기간 : 2021. 8. 5. ~ 2021. 8. 19.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